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630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[redacted] 주식회사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10. 2. 선고 2015구합776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9. 27.
판 결 선 고	2016. 11. 15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에게 한, 2013. 6. 21.자 취득세 590,777,210원, 농어촌특별세 59,077,730원, 등록세 236,310,890원, 지방교육세 47,262,1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. 12. 10.자 재산세 156,441,040원, 도시계획세 17,174,900원, 공동시설세 12,345,630원, 지방교육세 31,288,190원, 지역자원시설세 25,001,100원, 도시지역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2

45,241,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"원고가"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

평생교육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, 원고가 지식·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원고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, 이 사건 건물 부분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에서 정한 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(서울고등법원 2016. 5. 10. 선고 2015누61995 판결, 대법원 2016. 9. 30.자 2016두41842 판결 참조).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

③ 구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기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 등의 종업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(제32조),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(제33조),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를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(제35조), 그 이외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 대상에 관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2

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, 이는 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교육대상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고, 이 사건 교육시설과 같이 법령에서 교육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교육대상을 임의로 특정 집단 등으로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"어렵다"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

[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원고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과 달리 수강료를 지원받지 못하여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교육 대상을 원고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, 원고의 직무교육과정의 교육 대상자가 원고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된 것은 명백하고, 원고의 개인역량 개발과정의 경우에도 강좌는 원고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들의 수요에 따라 개설되었고, 그 명칭 자체도 "임직원 개인역량 개발과정"이며, 교육신청 및 참여방법에도 "임직원 모두에게 Open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."라고만 안내되어 있을 뿐 지역주민에 대한 내용이 없고, 지역주민이 개인역량 개발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고 홍보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(갑2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),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교육과정을 수강하지도 않았으므로, 개인역량 개발과정의 교육 대상도 원고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]

○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"주로는"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

교육비를 납부 받은 내역도 없는바,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서 주로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10면 표 "합계" 중 "재산세"란의 "141,392,980"을 "156,441,040"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2

으로 고침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상열

판사 정봉기

판사 조용래